

의안번호	2207542
의 퇴 인	이해식의원
회 답 일	2025.2.20.
추계번호	25D0563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결과

- 개정안에 따른 위원회 비상임위원의 정수 증원에 필요한 추가재정소요는 2025년에만 발생하며 총 3,200만으로 추계됨

[표 1]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5년

(단위: 백만원)

	2025	합계
위원회 비상임위원 정수 증원(안 제4조)	32	32
합계	32	32

주: 소수점 이하 반올림으로 계산결과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I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4조 (위원회의 구성)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의 위원 정수를 9명에서 13명으로 4명 확대함(제1항 및 제2항)	의무규정
2	안 제36조 (피해보상 및 명예회복)	정부는 피해자와 유가족의 피해보상을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하고(제1항), 피해보상의 기준·방법·절차 등은 따로 법률로 정함(제2항)	의무규정
3	안 제40조 (과거사연구재단 설립)	과거사연구재단 사업 중 ‘위령 사업 및 사료관의 운영·관리’의 내용으로, ‘사료관의 설치·추모공원 조성 및 관리·위령탑 건립’을 명시함(제3항제1호)	의무규정

III.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

1.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비고(추계 미 실시 사유)
1	안 제4조(위원회의 구성)	○	—
2	안 제36조(피해보상 및 명예회복)	×	피해보상 법률안 부존재
3	안 제40조(과거사연구재단 설립)	×	현시점에서 사료관·추모공원 건립 사업의 규모·위치 등을 예측할 수 없음

2.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

- 2020년 12월 10일 재출범한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의 위원 임기는 최대 2025년 11월 26일까지임
 - 현행법 제25조¹⁾는 위원회가 최초의 진실규명 조사개시 결정일 이후 3년간 활동을 하되, 그 기간 내에 진실규명활동을 완료하기 어려운 경우 1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함
 - － 재출범한 위원회는 최초의 진실규명 조사개시 결정(2021.5.27.)과 진상규명 활동(3년)을 한 후, 조사기간을 연장(1년)하였는데, 그 기한이 2025년 5월 26일까지임
 - 현행법 제5조²⁾ 단서는 위원회의 조사기간이 만료(2025.5.26.)될 경우 그 만료일 이후 6개월이 되는 날(2025.11.26.) 위원의 임기도 만료되는 것으로 간주하고 있으므로, 위원의 임기는 최대 2025년 11월 26일임
- 본 추계에서는 개정안에 따라 증원되는 비상임위원 4명의 임기를 부칙(공포 후 3개월 경과)과 법안심사를 고려하여, 2025년 5월 27일부터 11월 26일까지 총 6개월로 가정함
- 개정안은 피해자 및 유가족의 피해보상의 기준·방법·절차 등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본 추계에서 피해보상은 추계의 대상에서 제외함
- 개정안은 과거사연구재단의 사업³⁾ 중 “위령 사업 및 사료관의 운영·관리”의 내용으로 “추모공원 조성 및 관리, 위령탑 건립, 사료관 설치”를

-
- 1) 제25조(조사기간) ① 위원회는 위원회가 구성되어 최초의 진실규명 조사개시 결정일 이후 3년간 진실규명 활동을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이내에 진실규명활동을 완료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기간 만료일 3월 전에 대통령 및 국회에 보고하고 1년 이내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기간 만료 이전에도 조사의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위원회 의결로서 조사기간을 만료할 수 있다.
- 2) 제5조(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 ①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25조의 조사기간이 만료될 경우 그 만료일 이후 6월이 되는 날 위원의 임기도 만료되는 것으로 한다.
- 3) 제40조(과거사연구재단 설립) ① 정부는 위령 사업 및 사료관 운영·관리 등을 수행할 과거사연구재단을 설립하기 위하여 자금을 출연할 수 있다.
② 제1항은 다른 형태의 자금 출연을 방해하지 아니한다.
③ 과거사연구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담당한다.
1. 위령 사업 및 사료관의 운영·관리
2. ~ 4. (생략)
④ 과거사연구재단의 독립성은 보장된다.

명시하고 있는데, 현재 사업의 소관기관인 과거사연구재단이 설립되지 않았고 개정안에 따른 사업의 규모·위치를 합리적으로 예측하기 어려워 추계의 대상에서 제외함

- 과거사연구재단 설립(제40조)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의 제정(법률 제7542호, 2005.5.31.) 당시부터 존재하는 규정이지만, 현재까지 과거사연구재단이 설립되지 않아 개정안에 따른 사업을 수행할 기관이 없음
 - 추모공원과 사료관의 건립은 추모의 대상·성격, 수집자료의 양·회귀성 등을 고려하여 그 규모와 위치가 결정되는데, 현시점에서 개정안에 따른 사업의 규모를 합리적으로 예측할 수 없음
 - － 참고로, 추모공원의 조성과 관련하여, 제주4·3평화공원(395,380m² / 2001~2017년) 712억원(국비 712억원), 거창사건 합동묘역(162,140m² / 1998~2004년) 193억원(국비 190억원, 지방비 3억원) 산청·함양사건 합동묘역(84,780m² / 1999~2004년) 136억원(국비 133억원, 지방비 3억원) 소요됨
 - － 사료관의 설치와 관련하여, 부산 민주공원 부속건물(사료관, 3,191m² / 2020~2024년) 국비(69억원)와 지방비(69억원)를 합하여 138억원(부지매입비 제외) 소요됨
- 본 추계에서는 개정안에 따라 증원되는 비상임위원의 임기를 고려하여, 추계기간은 2025년 5월 27일부터 11월 26일까지 6개월로 함

3.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

가. 위원회 비상임위원의 정수 증원(안 제4조제1항)

- 비상임위원의 회의참석수당은 비상임위원의 증원 인원(4명)에 회의일수와 참석수당단가를 각각 곱하여 추계함
- 현재 진실화해위원회는 상임위원 3명을 포함한 9인으로 구성되며, 위원장을 제외한 2명의 상임위원이 제1소위원회와 제2소위원회의 위원장을 각각 맡고 있음
 - 전체회의: 위원장 포함 상임위원 3명, 비상임위원 6명 등 총 9명으로 구성
 - 소위원회: 각각 상임위원 1명, 비상임위원 3명 등 총 4명으로 구성
 - 회의참석수당 지급: 비상임위원 6명(전체회의 6명, 소위원회 6명)
- 2020년 12월 10일 재출범한 진실화해위원회의 최근 4년간 전체회의와 소위원회의 개최현황은 다음과 같음
 - 연평균 전체회의 일수: 23일 / 연평균 소위원회 일수: 21일
 - 회의참석수당: 1회당 350,000원(회의참석 250,000원, 안전검토 100,000원)

[표 2] 진실화해위원회의 연도별 회의일수(전체회의): 2021~2024년

(단위: 일수)

	2021	2022	2023	2024	합계	연평균
전체회의	23	26	20	24	93	23

자료: 진실화해위원회의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표 3] 진실화해위원회의 연도별 회의일수(소위원회): 2021~2024년

		2021	2022	2023	2024	합계	연평균
소위원회	1소위	20	26	19	24	89	22
	2소위	16	23	20	24	83	21
	소계	36	49	39	48	172	43
	평균	18	24	19	24	86	22

자료: 진실화해위원회의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 개정안에 따라 증원되는 비상임위원(4명)은 위원회의 존속기한을 고려하여 2025년 5월 27일부터 11월 26일까지 6개월(0.5년)간 재임한다고 가정함

[표 4] 비상임위원 정수 증원의 추가재정소요: 2025년

	전체회의 ¹⁾				소위원회 ²⁾				합계 (D+H, 백만원)
	인원 (A, 명)	회의수당 (B, 천원)	회의일수 (C, 05년)	소계 (D=A×B×C, 백만원)	인원 (E, 명)	회의수당 (F, 천원)	회의일수 (G, 05년)	소계 (H=E×F×G, 백만원)	
비상임위원 정수 증원	4	350	12	17	4	350	11	15	32

주: 1) 개정안에 따라 임명되는 비상임위원 4명이 참석한다고 가정

2) 개정안에 따라 임명되는 비상임위원 4명이 제1소위와 제2소위에 각각 2명씩 참석한다고 가정

3) 소수점 이하 반올림으로 계산결과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나. 추계결과

- 개정안에 따른 위원회 비상임위원의 정수 증원에 필요한 추가재정소요는 2025년에만 발생하며 총 3,200만으로 추계됨

[표 5]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5년

(단위: 백만원)

	2025	합계
위원회 비상임위원 정수 증원(안 제4조)	32	32
합계	32	32

주: 소수점 이하 반올림으로 계산결과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IV. 부대의견

- 본 추계는 추계가 가능한 일부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만 추계한 것으로, 전체적인 재정소요액은 추계된 금액을 상회할 수 있음

V.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행정비용추계과	장삼열	김안나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장삼열	02-6788-4831	jsy@assembly.go.kr